

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56(2004. 5. 31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232(2005. 8. 4)호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되고, 2006. 5. 18 조합설립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6-39(2006. 6. 29)호로 사업시행인가, 성동구고시 제2008-47(2008. 8. 21)호로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, 성동구고시 제2010-27(2010. 5. 4)호 및 성동구고시 제2011-79(2011. 10. 20)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12-37번지 일대(68,953.10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자성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몰 221동 140호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08년 08월 21일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토지용도변환

계	대지면적(m ²)						정비기반시설			
	소계	분양 주택	임대 주택	상 가	종교 시설	공공 청사	소계	도로	가로 공원	어린이 공원
68,953.10	62,434.80	42,558.27	4,431.00	11,090.23	2,428.00	1,927.30	6,518.30	2,296.30	2,517.00	1,705.00

나.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 변경

다. 일반분양 공동주택 분양가격 변경

라.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변경

6. 관계도서 : 생략 [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2286-6564) 및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(☎2299-0597)에 비치]